

# 풍경 주상복합 아파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신청자는 신청 주택 타입의 지역별 예치금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절차에서 제외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였는지 여부, 동·호 배정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당첨일로부터 신규로 신청하려는 지역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일 경우 1년, 수도권 외 지역일 경우 6개월, 위촉지역 일 경우, 3개월 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안내문 및 예정 되어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 및 신청자께서는 신청자격과 절차 등에 유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괴법동 821-5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지하1층, 지상20층, 1개동, 총 76세대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총 76세대 중 8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입주 시기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득한 주택으로 예정된 입주지정기간은 2024.04.01.(월) ~ 2024.05.31.(금), 2개월간임
- 금회 공급 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77.6594A	77A	77.6594	26.3489	104.0083	6.4267	110.4350	12.1546	19
	80.5939B	80B	80.5939	25.7856	106.3795	6.6697	113.0492	12.6138	19
	69.5914C	69C	69.5914	22.6614	92.2528	5.7591	98.0119	10.8918	19
	52.6948D	52D	52.6948	17.9875	70.6823	4.3608	75.0431	8.2473	18
	52.6948E	52E	52.6948	17.9866	70.6814	4.3611	75.0425	8.2465	1
합 계									76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각 배정세대

구 분		77A	80B	69C	52D	52E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1	1	1	1	0	4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부산광역시	1	1	1	1	0	4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합 계		2	2	2	2	0	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은 산정과정으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24년 12월 29일로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등
입주자모집공고	2023년 12월 29일(금)(예정)	분양사무소 내 게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분양사무소 개관	2023년 12월 29일(금)(예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패법동 821-5번지, 2층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4년 01월 08일(월)(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자 발표	2024년 01월 16일(화)(예정)	분양사무소 내 게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 모집공고일자 등 상기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신고 수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하실 경우,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모바일인증서 등을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 당일 09:00 ~ 17:30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마감시간을 경과할 경우 신청자가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더라도 접수가 종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특별공급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본주택 방문 시, 코로나 감염병 예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 해당 기관의 추천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자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매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며,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련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

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및 그 세대에 속하는 경우

※ 특별공급은 1세대에 1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등은 2024년 12월 29일로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

결이 가능하며, 만일 소명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이후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다른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타입 변경 등)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되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공급일정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문 상 공급대상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이므로, 추후 모집공고 승인 절차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사무소를 한정하여 방문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인정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기타

■ 분양사무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쾌법동 821-5번지, 2층(예정) 풍경주상복합 아파트

■ 문의전화 : 051-715-1152

※ 본 아파트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작성 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언제나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상기 이미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